

경제전환기 세계개혁 방향: GVC 재편에 따른 기업과세를 중심으로*

이성봉**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GVC 재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 및 국가가치사슬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 방향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 여건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 영도주의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주제어: 글로벌가치사슬, 기업과세, 법인세 인하, 영도주의 과세체계, 특허박스

투고일: 2020. 8. 11. 수정일: 2020. 8. 26. 게재확정일: 2020. 9. 8.

* 본 연구는 202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으며(2020-0428),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2020. 7. 16.)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sblee@swu.ac.kr)

I. 서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화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세계경제는 격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견인해 왔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구조적 재편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적 차원의 효율성 추구하고 함께 확대된 글로벌 생산세분화 기반 GVC 참여형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었다. 그런데 최근 10년 전부터 중국의 내수중심의 경제성장과 WTO 다자무역체제의 담보상태 등 여러 여건 변화로 GVC 참여형 무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미·중 무역 및 정치적 갈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충격파가 던져지면서 글로벌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Regional VC) 또는 국가가치사슬(National VC)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GVC의 재편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한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논의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GVC 재편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대외지향형 한국경제 발전 패러다임이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GVC 재편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는 학계와 정책입안자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GVC 재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GVC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GVC 발전의 핵심 동력이 비용효율성 추구라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세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조세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글로벌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국적기업의 GVC라는 점에서 조세와 GVC의 관계는 주요 연구 대상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요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GVC 재편과정을 전망하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II장에서는 GVC의 재편 및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 내용을 살펴본다. GVC 개념과 발전 추이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GVC 재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GVC 발전 전망을 진단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외지향형 한국경제가 직면하는 도전사항들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GVC와 기업과세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II. GVC 재편 및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

1. GVC 개념 및 현황

가. GVC의 개념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가치사슬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연구개발, 조달, 제조, 마케팅, 판매, 판매 후 서비스 등 일련의 가치 창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가치 창출 활동들은 마치 사슬처럼 엮여져 있는데, 기업이 각 단계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수행한 것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치사슬을 설계하고 운영하게 된다. 제품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일련의 가치사슬 활동들은 비용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분화(production fragmentation)되고, 이 세분화된 각 가치사슬 단계별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의 개방 확대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사슬이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가치사슬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현상의 총체를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다. GVC 확장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진행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다. 글로벌화는 기업의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 경제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기업의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활동에 따른 세계경제 글로벌화를 기업의 가치사슬의 국제적 확장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인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에서 GVC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GVC에 대한 보다 정교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World Bank(2020)는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전달되기 이전에 최소한 두 단계 이상의 가치사슬 활동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GVC를 정의하고 있다.¹⁾ 예를 들어 한국

1) GVC에 대한 논의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비해서 국제무역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Hummels et al.(2001)이 국제무역에서 수직적 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VS)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동 연구 이후 여러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한 국가의 GVC 참여도는 후방

자전거 회사가 이태리, 일본, 중국 등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입해서 이들을 조립해서 자전거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면 이것이 GVC 무역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제 무역거래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 등 두 개의 국가만 있으면 인정되지만, GVC 무역의 경우 수출국과 최종소비자가 이루어지는 수입국 사이에 또 다른 국가들이 부품 생산 및 특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또 다른 수입국 및 수출국 형태로 개입되는 것을 말한다.

나. GVC 발전 추이

전 세계 무역에서 GVC 참여형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80년대 30% 후반에서 40% 초반대를 보이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여 50%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그림 1]. GVC 참여형 무역 비중의 확대된 것에는 생산의 세분화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증가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World Bank 2020).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업들이 소싱활동을 글로벌 차원에서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어려움이 축소된 것들을 수 있다. 여기에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의 개발 등 운송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국제운송비가 하락한 것도 큰 몫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생산과정을 세분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다. 한편, WTO 다자간 무역규범 제정,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개도국의 자발적인 무역투자자유화 추진 등으로 무역투자 장벽이 전 세계적으로 낮아진 것도 GVC 확산의 요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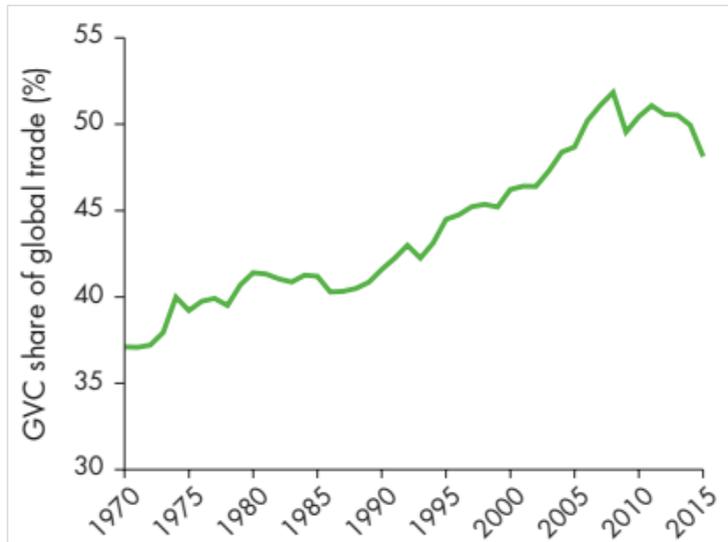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가던 GVC 참여형 무역의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었고 지난 10년 동안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World Bank 2020). 그 요인으로 몇 가지가 언급될 수 있는데, 먼저 글로벌 생산과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럽, 미국 등 거대경제권의 경제성장이 정체된 것과 관련된다.

참여(backward participation)와 전방참여(forward participation)로 구분되어 OECD 세계 투입산출표(World Input Output Database)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 있다.

$$GVC\text{참여도} = VS + VS1 = \frac{FVA}{GX} + \frac{DVX}{GX}$$

여기서 VS는 총수출(GX)에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FVA)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VC 후방참여를 의미하며, VS1는 제2국을 거쳐 제3국의 생산을 위해서 수출되는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DVX)가 총수출(GX)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GVC 전방참여를 의미한다. GVC 참여도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순찬(2020)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 GVC 참여형 무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특히, 이들 거대경제권의 소득 대비 무역 탄력성(trade-to-income elasticity)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깊다. 최근 거대경제권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내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무역의존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수출에서 수입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50%에서 2015년에 30% 수준까지 하락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 붐으로 2015년 원유수입액이 2010년의 1/4 수준으로 감소한 것도 관련이 있다. 한편, WTO 다자간 무역규범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과거 중국이나 동유럽의 시장개방에 비견할 새로운 신흥시장의 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2. GVC 재편 논의와 전망

가. 최근 GVC 재편 논의

GVC 재편과 관련된 논의는 최근 10년 동안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허대식 2020). 미국의 경우 제조업 부활정책의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리쇼어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법인세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등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미국계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의 50% 이상이 향후 5년 내 해외사업장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의 실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Reshoring Institute 2019)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 이외 다른 거대경제권 국가들도 리쇼어링과 유사한 산업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산업전략 2030을 발표하면서 독일기업들의 EU 역내 완결형 공급망(Closed Supply Chain)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핵심에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이 있으며, 법인세 인하 및 복귀 이전 비용 2/3를 부담하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중국의 경우 '중국제조 2025'라는 국가 제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간재의 국내생산 완결성을 추구하는 소위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을 추진하고 있다.

나. 향후 GVC 재편 전망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점점 격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GVC는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중국발 부품공급 차질로 주요국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GVC 재편에 대한 고려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 중 본국으로 회귀를 검토한 곳이 80%에 이른다(정용호 2020).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전대미문 봉쇄(Lockdown)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수요와 공급이 동시 단절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및 생산체계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생산 세분화 과정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또는 가까운 인근 지역 차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비중은 축소되고 유럽, 동아시아, 북미 등 지역 기반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또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가치사슬(National Value Chain)의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제조업의 탈중국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중 무역갈등으로 멕시코가 중국 공급체인을 빠르게 대체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이 강화되고 있다(이정민 2020). 소수의 집중된 공급망 단위에서 분산된 적절한 수의 공급망 단위를 통해서 위기 시 회복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증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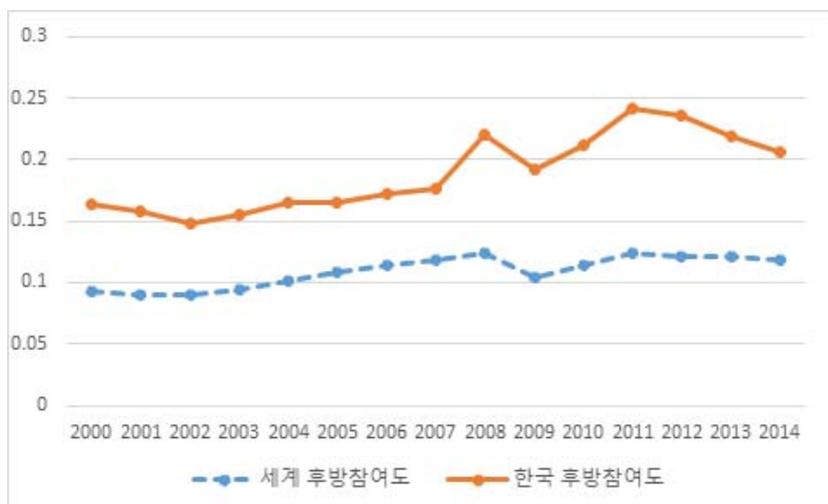
한편, 수요측면에서 보면 산업소비자 및 개인소비자 모두에게 현장 밀착형 유통망 구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글로벌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시적인 국제적인 이동이 가능한 상황을 상정한 고객지원방식에서 벗어나서 고객이 있는 해외 현지 시장 주재방식의 밀착형 고객지원방식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GVC 재편 국내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

가. 한국의 GVC 참여 현황과 GVC 재편 관련 국내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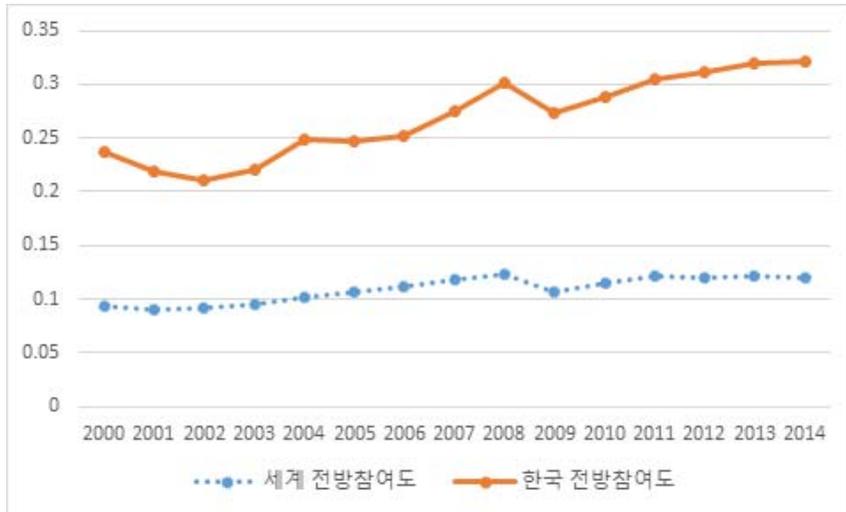
[그림 2]와 [그림 3]은 박순찬(2020)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전 산업(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 측정한 전 세계의 GVC 참여도와 한국의 GVC 참여도를 후방참여도와 전방참여도로 보여 주고 있다. 전 세계의 GVC 참여도는 전후방 모두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 하락하였고,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2014년 현재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전 세계 및 한국의 GVC 후방참여도



자료: 박순찬,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EU학연구」 제25권제2호, 2020.

[그림 3] 전 세계 및 한국의 GVC 전방참여도



자료: 박순찬,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EU학연구」 제25권제2호, 2020.

한편, 우리나라의 GVC 참여도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박순찬 2020). 첫째, 후방 및 전방 참여도 모두에서 한국의 GVC 참여는 전 세계 GVC 참여보다 그 수준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으로 한국의 경우 이미 GVC와 매우 높은 결합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후방참여도의 경우 2011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방참여도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2009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최종재 생산 및 수출에서 외국 부가가치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최종재 생산 및 수출에서 한국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GVC 재편과 관련된 논의는 우선적으로 리쇼어링과 관련이 있다. 국내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계감면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동 제도의 실효성은 의심을 받고 있다. 지원금 1억원당 5.4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에 공장 신설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최우혁 2019), 제도 도입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복귀한 기업이 52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GVC

재편에 대한 국내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은 한·일간 과거사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무산된 이후 양국간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실시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몇 개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및 해외 생산 현장에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업계 모두 GVC 재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확산과 GVC 재편에 대응한 산업전략을 준비 중이며,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에 대응해 정교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 등 조세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나. GVC 재편과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함께 확산되어 왔던 GVC가 최근 보호주의 강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및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큰 변화가 전망된다. 과거 GVC는 생산의 글로벌 세분화의 촉진과 함께 전 세계적 차원의 확대형태로 발전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갈등 등 여건 변화로 지역적 차원의 가치사슬 구축 또는 리쇼어링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사슬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GVC 재편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하는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양상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은 GVC 참여를 통해서 한국 산업의 비교우위를 제고했다(박순찬 2020)는 점에서 세계 거대경제권이 자국 중심의 가치사슬 확충 등 GVC 축소 방향의 재편이 진행될 경우 한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으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력산업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의 국내 생산 및 혁신활동의 활성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고도기술중심의 산업경쟁구조 특성상 연구개발활동 중심의 국내 혁신활동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해외시장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직접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해외 현지시장에서의 해당 국가 기업들 또는 해당 시장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경제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내수시장에 기반한 경쟁력 유지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결국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현지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연계성을 고도화하는 형태로 한국경제 발전기여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방향

1. GVC와 기업과세와의 관계

국제 무역과 투자를 통해서 형성되는 GVC의 각 단계별로 창출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가치창출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정당하게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GVC 자체가 어떤 과세 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계은행도 GVC 자체가 국가 간 조세경쟁 또는 기업의 조세회피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World Bank 2020).

그러나 GVC가 글로벌 과세문제의 정점에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국 내에서 창출된 가치창출분에 대한 구분계산에서 GVC의 각 단계에 얽혀있는 국가들 간 서로 상이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GVC 중 부가가치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가치사슬부분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각국이 법인 세율을 인하하거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각국 정부는 자국의 정당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정사업장 존재여부에 대한 문제와 이전가격결정과 관련된 문제 등이 첨예한 기업과세 이슈가 된다. 한편, 후자와 관련된 주요 조세이슈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특허박스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 입장에서 GVC와 기업과세는 양면성이 있는 관계라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GVC 가치창출분에 대해서 과세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GVC의 주요 부분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입장도 있다.

[표 1] 'BEPS 대응방안' 세부과제

번호	과제명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2	혼성 불일치 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른 이중비과세 현상방지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해외자회사 소득의 장기간 유보 방지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5	유해조세경쟁 방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6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고정사업장 구성요건 악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8-10	이전가격 세제 강화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11-12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13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14	효과적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절차 개선
15	다자간 협약	다자조약을 통한 양자조세조약의 신속한 개정

자료: 기획재정부,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보도참고자료, 2020. 5. 14.

여기에 전 세계 GVC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들의 글로벌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입장이 얽히면서 GVC와 관련한 기업과세문제는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GVC와 기업과세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며(Owens · Tavares 2018),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OECD를 중심으로 국제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그 국제협력의 결과가 바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이다. 2015년 OECD와 G20는 공동으로 ‘BEPS 대응방안’을 15개 세부과제(Action Plan)로 확정했으며, BEPS 프로젝트 참여국(2019년 12월 현재 137개국)은 15개 세부과제 중 4개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BEPS 대응방안 내용들이 여러 가지이지만 글로벌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는 다국적기업 중심의 GVC 확산에 따른 각 국가의 과세권 확보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BEPS 대응방안’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절세전략 추진과 각국의 투자유치 노력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사항이 각각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나 국가 간 유해조세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2.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방향

가.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의 방향성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GVC와 기업과세는 기본적으로 애증의 양면적 관계를 갖고 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응한 GVC에 대한 적정한 과세권 확보와 동시에 고부가가치 GVC 활동들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마련이 상충적으로 얽혀 있다. 우리 정부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응한 GVC 과세권 확보를 위한 BEPS 논의 등 국제적인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과세가 고부가가치 GVC 활동들의 국내 활성화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G20가 OECD와 함께 'BEPS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G20 국가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고부가가치 GVC인 연구개발활동을 자국내 유치하려는 특허박스제도가 - 적용대상 소득의 산정과 관련해서 'BEPS 대응방안'에 따른 일부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방지가 'BEPS 대응방안'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조세피난처 등 심각한 국제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해결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보다 큰 틀의 조세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가 최근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결국, 국제적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유도하는 차별적이고 특정성이 있는 특혜적 조세제도는 국제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법인세율의 인하 또는 혁신활동의 보편적 결과인 지식재산권의 정상적인 창출 및 활용에 대한 지원 등은 국제적인 감시 및 규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GVC와 기업과세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엄연한 양면적 현실은 최근 변화하는 GVC 구조재편과정과 함께 우리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정도로 제한시켜서는 최근 GVC 재편과정에 따른 한국경제 도전사항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해외진출기업들이 대부분 거대 해외시장진출 목적의 해외투자 및 해외의 저렴한 비용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해외시장 내 생산거점 확보형 투자의 경우 현지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내복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한편, 저비용 추구형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복귀 조세감면으로 국내 비용열위를 단기적으로는 극

복할 수는 있지만 사업구조상 장기적으로 국내 고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과세 개혁방향은 보다 큰 틀에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의 비싸지만 양질의 고급인력과 고도로 발달된 산업 인프라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거대 해외시장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여건도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경쟁력 제고는 우리나라 출신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한국 중심 GVC와 연계되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 영토주의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세제 정비 등 세 가지 방향을 GVC 재편에 따른 기업과세 개혁방향으로 제시한다.

나. 법인세 부담 완화

GVC가 지역가치사슬(RVC) 또는 국가가치사슬(NVC) 형태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최근 가속화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이 기업 활동, 특히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입지 매력도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의 기업입지 매력도 제고 노력의 한 축에 법인세율 인하가 자리하고 있다 [표 2].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경제활동지역으로서 독일의 매력도를 증진시킨다는 목표하에 2008년 기업과세개혁법안(Unternehmensteuerreformgesetz 2008)을 통과시키면서 법인세 명목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²⁾하였다. 일본의 경우 30%였던 법인세율을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19년에는 23.2%까지 인하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2010년 28%의 법인세율이 매년 인하되어 2017년부터는 19%가 적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2016년에 기존 38%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4.4%로 낮추었으며, 2019년에는 32.0%, 2020년에는 31%로 인하되었다.

2) 독일은 법인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영업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조세를 함께 고려한 세율은 2008년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38.6%에서 29.8%로 낮아졌다.

[표 2] 법인세 최고세율 국제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랑스	34.4	36.1	36.1	38.0	38.0	38.0	34.4	44.4	34.4	32.0
독일	29.5	29.6	29.6	29.6	29.7	29.8	29.8	29.9	29.9	29.9
일본	39.5	39.5	39.5	37.0	32.1	30.0	30.0	30.0	29.7	29.7
이탈리아	31.4	31.4	31.3	31.3	31.3	31.3	31.3	27.8	27.8	27.8
한국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7.5	27.5
캐나다	29.4	27.7	26.1	26.2	26.2	26.7	26.7	26.7	26.8	26.8
미국	39.2	39.2	39.1	39.0	39.1	39.0	38.9	38.9	25.8	25.9
영국	28.0	26.0	24.0	23.0	21.0	20.0	20.0	19.0	19.0	19.0
G7	33.1	32.8	32.2	32.0	31.8	31.0	30.2	31.0	27.6	27.3
OECD	25.1	25.1	25.0	25.1	24.9	24.7	24.4	24.2	23.7	23.5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가 2018년부터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다. 당시 미국 백악관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법인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억 달러 증가하고,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310억 달러 감소하여 순 직접투자(net foreign direct investment) 금액 증가가 3,320억 달러가 있을 것으로 홍보하며 미국의 기업 입지 매력도를 법인세 인하와 연계시켰다(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2017).

[표 3] OECD 제조업 비중 상위 10개국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국가	제조업 비중	순위	법인세율(2019)	
			국제기준	지방세 포함
아일랜드	33.9	1	12.5	12.5
한국	29.5	2	25.0	27.5
체코	26.8	3	19.0	19.0
슬로베니아	23.7	4	19.0	19.0
헝가리	23.1	5	9.0	9.0
독일	22.8	6	15.8	29.9
일본	20.8	7	23.2	29.7
슬로바키아	20.0	8	21.0	21.0
터키	19.8	9	22.0	22.0
폴란드	19.3	10	19.0	19.0

자료: 경총,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주요내용」, 경총내부자료, 2020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9년 27.5%로 OECD 평균인 23.5%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36개 회원국에서 11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의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인 25.1%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 되었다. G7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33.1%에서 2019년 27.3%로 인하되었으며, OECD 국가들도 2010년 25.1%에서 23.5%로 낮아졌는데, 한국은 법인세율이 2010년 24.2%에서 2019년 27.5%로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10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더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 법인세 한계실효세율 OECD 주요국 비교

구분	한계실효세율		순위		변화(%p)
	2005	2014	2005	2014	
프랑스	35.4	36.0	3	1	0.6
미국	35.9	35.3	2	2	-0.6
한국	32.8	30.1	6	3	-2.7
일본	31.5	29.3	7	4	-2.2
호주	26.2	26.2	10	5	0.0
스페인	30.4	26.0	8	6	-4.4
호주	25.9	25.9	11	7	0.0
이태리	33.5	24.5	5	8	-9.0
독일	31.0	24.4	4	9	-9.6
영국	30.0	23.7	9	10	-6.3
단순평균	22.3	19.4	-	-	-2.9
가중평균	31.4	28.2	-	-	-3.2

자료: Chen & Mintz(2015), The 2014 Global Tax Competitiveness Report의 Table 3; 조경엽(2016) 재인용.

투자단위당 법인세 부담을 의미하는 한계실효세율에 대한 OECD 주요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한 Chen and Mintz(2015)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은 32.8%로 비교 대상 국가 중 6위였는데, 2014년의 경우 30.1%로 프

랑스와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었다[표 4]. 동 연구의 대상 연도인 2014년에 프랑스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38%였는데 2019년에는 32%로 낮아졌고,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4년에 39.1%에서 2019년 25.9%로 낮아진 반면, 한국의 경우 2014년 24.2%에서 2019년 27.5%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2014년 대비 20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한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이외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2019년의 경우 한국이 한계실효세율 측면에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한국은 법인세 부담측면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입지로서 그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반대로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50년 넘게 유지해왔던 외국인투자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EU의 조세회피국가 지정에 따른 대응조치로 2019년부터 폐지되면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한국 사업활동 입지 매력도는 하락하게 되었다. 글로벌기업의 투자입지 선택에서 조세부담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의 최근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관련 제도 변화는 지역 및 국가 가치사슬 구축으로 변화되는 GVC 재편 추이와 맞물려 한국기업 및 글로벌기업의 한국 내 투자 확대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VC 재편과정에서 국내기업 및 글로벌기업의 한국 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단위 당 조세부담인 한계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인하방안은 조세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기업 및 투자 친화적 정책의 시그널 효과도 크기 때문에 최근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GVC재편 과정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행위와 직접적인 연결을 담보하지 못하고 상당한 세수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최근 정부 지출 수요의 급증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직접적인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부담완화에 대한 차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의 제도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공제율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법에서 규정한 특정 투자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정해서 해당 투자활동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다. 반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투자세액공제는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에서 정한 공제배제 투자활동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해서 그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적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관계없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투자활동을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면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국내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

지역가치사슬(RVC) 또는 국가가치사슬(NVC) 형태로 재편되는 GVC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게 해외 현지에서 경쟁격화라는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서유럽 국가, 중국 등이 리쇼어링의 촉진 등을 통해서 자국 기업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들 거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에 생산거점을 설치한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기업들도 기존 GVC에 기반한 현지 생산체계에서 공급망 현지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의 성공에서 현지 경쟁조건들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겠다. 즉,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이 해당 국가 기업 또는 현지에 진출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는가가 정책의 중요한 착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법인세 측면에서 이 정책 착안사항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법인세 과세체계는 크게 글로벌 과세체계와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대별되는데, 글로벌 과세체계는 자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자국의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이며, 영토주의 과세체계는 자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과세체계의 차이점은 자국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해외 현지에서 한 번만 과세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에서 과세되고 나서 국내에서도 과세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다. 해외에서 한 번만 과세가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영토주의 과세체계이며, 해외에서 과세되고 나서 국내에서도 한 번 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과세체계인 것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영토주의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표 5].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OECD 회원국 중 5개 국가만이 글로벌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과세체계를 대표적으로 유지해왔던 미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면서 글로벌 과세체계를 전격적으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했다. 미국은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함으로써 미국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자산을 미국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작용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현지국 기업 및 현지에 진출한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GVC의 재편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직면하는 경쟁상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법인세 과세체계를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 글로벌 과세체계와 영토주의 과세체계의 비교

구분	글로벌 과세체계	영토주의 과세체계
과세원칙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 과세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국가	OECD 국가 중 5개국: 한국,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나머지 OECD 회원국 31개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 2019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될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진출 기업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이 있다. 글로벌 과세체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해외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한 번 더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반면, 영토주의 과세체계의 경우 해외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해외소득면제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것이다. 이 두 방식은 결국 국내 법인세율과 해외 현지국가의 법인세율 차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 법인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추가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과세체계이든 영토주의 과세체계이든 차이가 없지만,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 법인세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영토주의 과세체계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법인세율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현지에서의 경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라.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최근 GVC 재편은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의 고급인력과 산업 인프라를 활용,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한국 내 혁신활동을 촉진할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허박스(patent box)제도는 자국 내 혁신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제품제작 및 판매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과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활동에 소요된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 등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기업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이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지식재산권 자체의 거래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표 6]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구분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	특허박스제도
목적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국내기업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방법	- 지재권 자체에 대한 조세감면 - 기술 이전·취득에 대한 조세감면	- 지재권 제품에 대한 조세감면 - 기술이전소득뿐만 아니라 지재권 활용 사업화 소득에 조세감면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업규모 제한 없음

자료: 하홍준·곽현,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위원회, 2020.

혁신활동의 투입과 산출의 일련의 과정에 이들 제도가 어느 지점에 포지셔닝하고 있는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투자세액공제는 전적으로 혁신활동의 투입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혁신활동의 투입과정과 산출과정에 모두에 걸쳐 있지만 지식재산권 자체의 개발 및 이전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특허박스제도는 혁신활동의 촉진을 지식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창출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활동의 산출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다[표 6].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특허박스 적용세율과 경감수준을 보면 법인세 부담은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경감되고 있다.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감면율 40%를 보인 중국의 경우 정상 법인세율이 25%인데 특허박스 적용세율은 15%이다. 벨기에의 경우 정상 법인세율은 29.58%이지만 특허박스 적용세율은 4.44%에 불과해 85%를 감면해주고 있다[표 7].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중국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박스제도의 효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전반적인 혁신수준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율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진 2017). GVC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혁신기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투입중심의 R&D 지원세제와 함께 성과중심의 R&D 지원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표 7] 특허박스제도 운영국가의 특허박스 적용세율 및 경감수준

구분	① 법인세율 (%, 2019년)	② 특허박스 적용세율(%)	③ 경감수준(%) (①-②)/①
아일랜드	12.5	6.25	50
네덜란드	25	5	80
영국	19	10	47.4
프랑스	32.01	10	68.8
벨기에	29.58	4.44	85
중국	25	15	40

자료: 하홍준·곽현,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위원회, 2020을 참조하되, 2019년 각국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저자가 재작성.

특허박스제도의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편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허박스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접근방식이 가능한데, 첫째, 특허박스제도를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그 파급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모든 기업에 대해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되, 감면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두 방법 모두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GVC 재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 및 국가가치사슬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 방향성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거대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 여건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 영토주의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법인세 부담 완화의 경우 GVC 재편과정에서 국내기업 및 글로벌기업의 한국 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투자단위 당 조세부담인 한계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직접적인 법인세율 인하의 차선책으로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의 제도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공제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영토주의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의 경우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이 해당 국가 기업 또는 현지에 진출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 번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토주의 과세체계로의 변경을 통해서 해외시장에서 현지국 기업 및 현지에 진출한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등 혁신활동 기존 지원제도가 주로 투입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특허박스제도는 혁신활동의 산출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

어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혁신 GVC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GVC 재편에 따른 한국경제의 도전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상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GVC 재편과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 거점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것에는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강성 노조, 강력하고 공정한 법치주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인세율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법인세 부담 완화,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등 기업과세 개편방안의 경우 모두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한국 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수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세출 부분에 대한 조정 또는 다른 세원의 확보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출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의 설정 등 효과적인 세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제공 등 정부정책의 유연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수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그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GVC 재편과정에서도 한국의 기업활동 입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 국회예산정책처, 2019.
- 민경진·서기열, “돌아온 기업 80곳 중 절반만 가동 중…‘한국은 유탄기업 무덤’,” 한국경제신문, 2020년 6월 5일자, A3면.
- 박순찬,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EU학 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EU학회, 2020.
- 심혜정·백경엽·태정림,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Nabo Focus 제16호, 국회예산정책처, 2020.
- 유경진,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효과와 시사점」, KERI Brief 17-04, 한국경제연구원, 2017.
- 이정민, “코로나19가 불러올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4. 2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1274>, 접속: 2020. 9. 14.>
- 정용효, “리쇼어링·글로벌 공급망 재편…사라지는 ‘세계의 공장’,” 「한국경제신문」, 2020. 5. 18.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51510561>, 접속: 2020. 9. 14.>
- 조경엽, 「법인세 한계세율에 대한 소고」, KERI Brief 16-17, 한국경제연구원, 2016.
- 조재한·김인철, “코로나19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중장기 대응방안,” 「KIET 산업경제」 2020년 4월호, KIET 산업연구원, 2020, 42~50쪽.
- 최우혁, “유탄기업 종합지원대책,” 「나라경제」 제338호, KDI 경제정보센터, 2019, 48~49쪽.
- 최현경·성열용, “특허박스(Patent Box)제도의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 「KIET 산업경제」, 2013년 11월호, KIET 산업연구원, 2013, 50~58쪽.
- 하홍준·곽현,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위원회, 2020.
-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 내부자료, 2020.
- 허대식,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전략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 「월간통상」 제97호, 산업통상자원부, 2020, 8~13쪽.
- Chen, D. and Mintz, J., *The 2014 Global Tax Competitiveness Report: A Proposed Business Tax Reform Agenda*, University of Calgary, 2015.
- Ernst & Young, *Minimize your Value Chain Risk amid Global Tax Evolution*, EY, 2015.
- Hummels, D., Ishii, J. and K. Yi, “The Nature and Growth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54, 2001, pp.75-96.

Owens, J and Tavares, R., *Global Value Chain Policy Series Taxation*, World Economic Forum, 2018.

Reshoring Institute, *The Changing Trends of Reshoring in the United States*, Reshoring Institute, 2019.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The Growth Effects of Corporate Tax Reform and Implications for Wages*, CEA, 201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UNCTAD, June 20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World Bank Group, 2020.

Corporate Tax Reform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Lee, Seongbo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global value chain (GVC) restructuring trends after the pandemic of COVID-19 to the Korean economy and suggests the corporate tax reform to cope with these GVC restructuring. The GVC which has been developing and expanding continuously now confront the structural changes amid the pandemic of COVID-19 and the trade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such as the emergence of regional value chain or national value chain. The GVC restructuring trends bring difficult challenges to Korean economy such as securing stable supply chains in major industry sectors and supporting the overseas Korean companies.

This study suggests Korean corporate tax reform plan in three ways. Firstly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burden by lowering corporate tax rate or introducing universal investment tax credit. This measures could boost GVC activities and investment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in domestic market. Secondly the adoption of territorial taxation system instead of global taxation system. This reform could enhance competition capability of the overseas Korean companies in foreign local markets. Thirdly the introduction of patent box. Most of current tax incentives for firms innovation activities in Korea focus mainly on the input side of R&D. The patent box system could promote more effectively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within Korea.

□ Keywords: GVC(Global Value Chain), Korean Corporate Tax Reform, R&D, Patent Box, Territorial Taxation Syste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Women's University